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. 5. 11 선고 2020가단381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0. 12. 15.

판 결 선 고 2021. 5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전남 해남군 C 임야 476㎡ 중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마) 부분 2㎡ 지상 창고를 철거하고, 같은 도면 표시 17, 18, 23, 22,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21㎡를 인도하고,
나. 전남 해남군 D 대 198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3, 14, 24, 11, 12,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라) 부분 2㎡ 지상 철제대문을 철거하고, 위 (라) 부분 2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20. 2. 13. 전남 해남군 C 임야 476㎡(이하 ‘이 사건 제1 토지’라 한다) 및 D 대 198㎡(이하 ‘이 사건 제2 토지’라 한다)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피고는 1999. 1. 30. 이 사건 제1 토지와 인접한 전남 해남군 E 임야 916㎡(이하 ‘피고 토지’라 한다)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피고 토지 지상에 미등기 창고(이하 ‘피고 창고’라 한다)를 설치하여 이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.

다. 피고 창고는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마) 부분 2㎡를 침범하고 있고(이하 위 침범 부분을 ‘이 사건 창고’라 한다), 피고는 같은 도면 표시 17, 18, 23, 22,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21㎡를 창고, 배수로 및 과수원 등의 부지로서 점유하고 있다(이하 위 점유 부분을 ‘이 사건 창고 점유 부분’이라 한다).

라. 한편, 피고는 피고 토지 지상에 철제 대문(이하 ‘피고 철제 대문’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 이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데, 이 사건 철제 대문은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, 14, 24, 11, 12,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라) 부분 2㎡를 침범하고 있다(이하 위 침범 부분을 ‘이 사건 철제 대문’이라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, 을 제1, 2호증(가지번호도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 또는 영상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해남진도지사(이하 ‘해남진도지사’)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적법한 권한 없이 이 사건 제1 토지 중 이 사건 창고 점유 부분을, 이 사건 제2 토지 중 이 사건 철제 대문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는바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, 이 사건 제1 토지 중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고, 이 사건 창고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, 이 사건

제2 토지 중 이 사건 철제 대문을 철거하고, 이 사건 철제 대문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1) 피고는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해남진도지사 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가 잘못되었는바, 피고 창고 및 철제 대문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1, 2 토지를 침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1)

2)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(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)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측량감정촉탁결과가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)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다. 소결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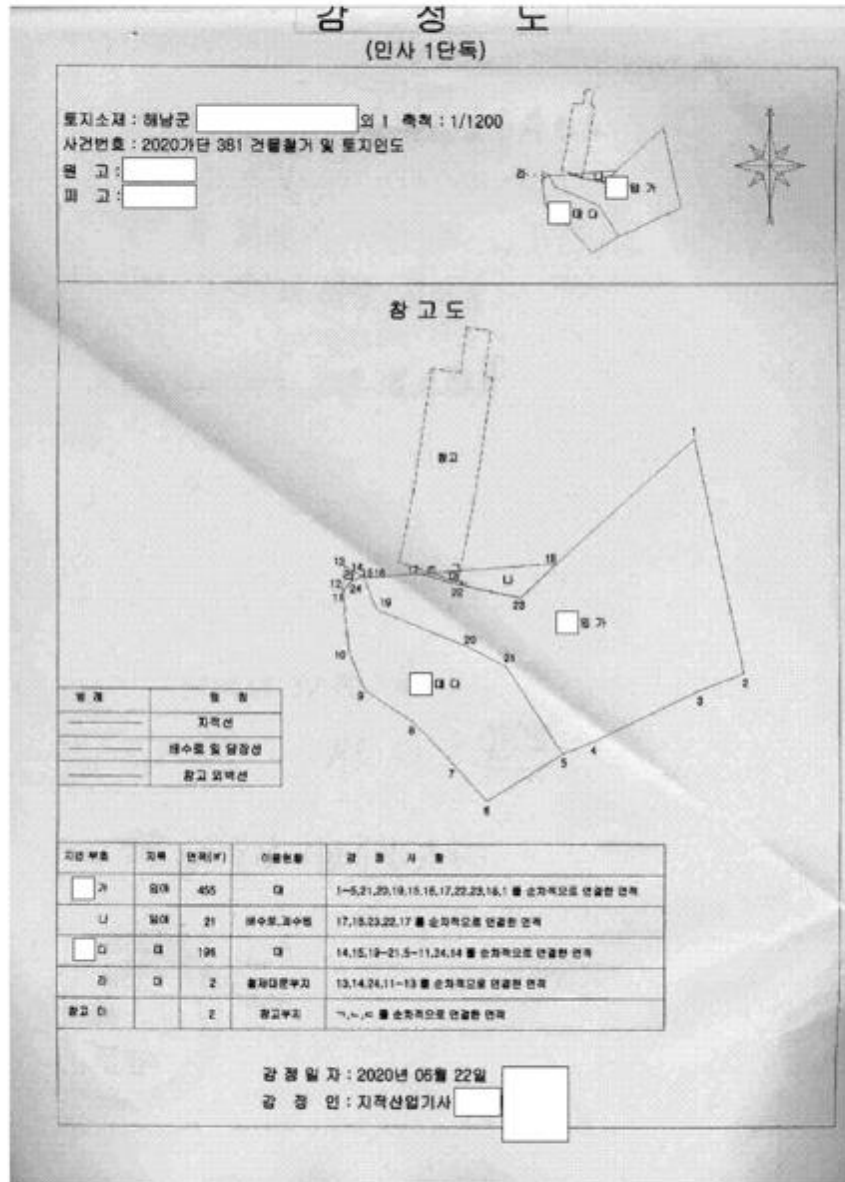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, 이 사건 제1 토지 중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고, 이 사건 창고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, 이 사건 제2 토지 중 이 사건 철제 대문을 철거하고, 이 사건 철제 대문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편병호

별지



1)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피고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할 것을 구두로 여러 차례 명하였음에도, 피고의 주장이 다소 불분명한바, 피고가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으로 선택한다.